(參 照)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table>
<tr><th>연번</th><th>안 건 명</th><th>부 의 안 건 요 약</th><th>소관부서</th><th>비 고</th></tr>
<tr><td>1</td><td>'98년도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td><td>□ 제안이유
'98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예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상정리하여 결산서를 작성, 그 결과를 자체분석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단위:원)
<table>
<tr><th>구 분</th><th>세입결산액 (가)</th><th>세출결산액 (나)</th><th>세계잉여금 (가)-(나)</th></tr>
<tr><td>계</td><td>884,513,872,270</td><td>594,908,215,810</td><td>289,605,656,460</td></tr>
<tr><td>일반회계</td><td>602,549,612,110</td><td>428,360,847,600</td><td>174,188,764,510</td></tr>
<tr><td>특별회계</td><td>281,964,260,160</td><td>166,547,368,210</td><td>115,416,891,950</td></tr>
</table></td><td>회 계 과</td><td>행정경제</td></tr>
<tr><td>2</td><td>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td><td>□ 제안이유
성남시의회 포상규정중 의회공적 심사위원회 위원을 보강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보강
(안 제11조 제2항)
· 각 상임위원회 위원 4인이내
○ 제1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제11조③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 보관한다.</td><td>의회사무국</td><td>의회운영</td></tr>
</table>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3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 **제안이유**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이 공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민공사 감독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 제1조(목적)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위촉대상)관내 거주자중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한자로 동별 1~2명으로 총 60명 이내로 위촉함 ○ 제3조(위촉방법)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촉 할 수 있음 ○ 제4조(업무)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모든공사에 대하여 자문, 감시활동, 제보, 지역주민의 민원불편사항 전달, 공사시행에 관한 의견제출등을 수행함 ○ 제5조(운영)공사를 시행하기전에 시행공사별로 시민공사 감독관을 지정하고 모든 공사 계획을 시민공사감독관에게 사전통보함과 아울러 시민공사감독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지원하여 감독관의 제보 및 의견등을 수렴, 공사시행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 제6조(경비지원)공사 시행상 필요한 활동이나 회의등에 참석시 일정액이 기본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건 축 과	도시건설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4	성남시행정정보 공개조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93. 8. 5)하여 '94. 1. 1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98. 1. 1시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적인 이행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하여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반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ㅇ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1항가,나목) ㅇ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삽입 (안 제11조) ㅇ제3자의 이의신청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2)	총 무 과	행정경제
5	성남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99. 8. 7. 대통령령 제16521호로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 「관인관리」 분야 개정에 따라 성남시공인조례를 문안 정비 및 보완코자 함	총 무 과	행정경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 **주요골자** ㅇ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관인관리」에 따라 성남시 공인조례 용어중 "공인"을 "관인"으로 개정 ㅇ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의1의 2항) ㅇ공인(특수공인 포함)의 교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 시행 (안 제6조) ㅇ종전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는 공인(직인)을 찍도록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한 경우에도 시행 가능 (안 제15조 제1항)		
6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의 범주 설정권자가 변경되고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 중 분임지출원 변경 □ **주요골자** ㅇ"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 (안 제2조) ㅇ"기획실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예산계장"을 "경영사업담당주사"로 개정 (안 제9조)	기획예산과	행정경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7	성남시도시공원 조례중개정조례 (안)	□ **제안이유**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령이 개정되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이 통보되어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ㅇ직제개편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관리토록 한 규정 삭제 (안 제3조) ㅇ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승인등으로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양수시 허가 또는 신고규정 삭제 (안 제18조) ㅇ공원입장료 등에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입장료를 정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 (안 제7조) ㅇ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자율화 함 (안 제8조) ㅇ녹지 및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및 규모 확대 (안 제6조, 안 제11조)	공원관리과	사회복지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8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99년도 행정규제정비 지침에 따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내용중 조례에 중복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ㅇ행정여건 변화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공중화장실의 부속시설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공중화장실의 관리인 지정 및 편의용품 비치·제공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9조)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및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11조) -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개선명령 및 이행기간등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14조, 15조) - 공중화장실중 유료화장실 승인 및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 17조, 18조)	청 소 과	사회복지
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 **제안이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하는데 있어 성남시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함	주 택 과	도시건설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비 고
		□ 주요골자 ㅇ보증금액 : 5,500백만원(일금오십오억원정) ㅇ보증기관 : 성남시 ㅇ전세자금신청대상자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 -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 ㅇ융자한도 : 세대당 1,000만원 이내 ㅇ지급보증은행 : 한국주택은행 성남지점 ㅇ지급보증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 (연기신청시 연기기간내) ㅇ지급보증내역 - 자 금 명 :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 상환조건 : 2년이내 정기상환 (전세재계약시 1회연장가능) - 이 율 : 년리 3% - 상환재원 : 신청자 부담		